

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
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(시험기간 제외)	
신청인	①상호(명칭)	②사업자등록번호	
	③대표자	④생년월일	
	⑤주소 (전화번호:)		
	⑥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:)		
자동차	⑦변경내용		
	항 목		
	변경 전 자동차		
	변경 후 자동차		
	⑧변경사유		⑨인증번호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

귀하

첨부서류	1.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자동차 제원(諸元)명세서 3.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.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	수수료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1. ㉠란은 최초 인증받은 내용과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적습니다.
- 2. ㉡란은 이미 인증된 내용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 등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